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1년 5월 28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29)상정
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30)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 이규필)

가. 제안이유

-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류 철도경지권 이용하여 역무 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 28,773를 일반상업 지역 28,773로 변경
- 시설녹지 : 118,893를 108,753로 변경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요지	답 변 요 지
○ 부천역민자역상의 당위성이 미흡한데	○ 경인전철로 남북간 동선이 절단된 상태에서 부천역을 중심으로 계개발을 통하여 부천시의 중심 상업지구로 육성하여 전철을 지하화하고 현전철 노선부분을 지하화 하여 이의 연결은 당연함(차량통과 가능 주차장 750대 수용)
○ 남부역쪽 잠상인의 철거대책은	○ 해당초지가 전부 국유지(철도청)로서 이의 민원은 문제가안된것으로 사료됨.
○ 민자역사가 생길 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당은?	○ 인구집중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완료 단계에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해당없음

나. 반대토론 : 최용섭 - • 8층민자역사 건설로 교통난 심화
• 민자역사 참여자인 소수인에 이익편중

5. 심사결과

부 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민자역사의 필요성도 있음.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항) 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

1991. 5. 31

지역개발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1. 5. 25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1년 5월 28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29)상정
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29)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 이규필)

가. 제안이유

- '97.4.10 신. 활주로 개설과 함께 대형항공기의 빈번한 이·착륙활주로 인접 지역으로서 인근에 화공약품저장탱크(서울 소재)가 있어 폭발사고 우려 및 심각한 항공기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지역이며
- 동 지역에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 항공기의 이·착륙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도시계획시설(공항)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할 것을 의결한다.
- 결정(변경)조서
 - 기정 : 공항시설 중구 고강동 90-4번지 일원 84,13평
 - 변경 : 공항시설 중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122,246평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 요지	답 변 요 지
○ 공항시설 지역주 민 이주대책? 360동이 어디로	○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임(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아)
○ 이주대책시 부천시에서의 재정부담이 없어야, 또한 서울과 공동으로 추진해야?	○ 중앙정부, 서울시와 체계적인 협의로 추진하고 우리시 예산은 안쓰도록

4. 토론요지
해당없음
5. 심사결과
원안가결
6. 소수의견의 요지
원안가결

부천도시기본계획(변경)안심사보고서

1991. 5. 31
지역개발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- 가. 제안일자 : 1991. 5. 25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1년 5월 28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29)상정
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(1991. 5. 30)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
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 이규필)
- 가. 제안이유
- 법정 도시기본계획 검토시간 도래와 인구증가, 중동신도시 조성, 수도권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,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건설및 영종신공항건설 등 제반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2011년을 목표로 부천시의 발전방향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지침을 마련코자 함.
- 나. 주요골자
-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(안)참조 (30-31 페이지)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역곡 피안동 봉치지구해제및 재개발할 계획은?	○도시계획 재지바시 심층저그로 검토하겠음.
○역곡역 상업지구 확장은 가능한지? 역세권 개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은?	○도시계획재정비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음

4. 토론요지
해당없음
5. 심사결과
원안가결
6. 소수의견의 요지
원안가결